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기업집단의 개념과 입법취지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 이에 반해 재벌은 '총수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소유 및 지배되고 전체가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구별가능.

=> 재벌 규제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이라는 용어사용을 사용하고, 총수에 의한 지배라는 재벌의 핵심요소 대신에 사실상 사업내용의 지배라는 형식적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전력, 포스코 등 공기업집단 또는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를 가진 집단도 포함.

-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 의해 성장한 재벌들은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거대한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때 재벌들은 주로 계열기간간의 출자(순환출자)와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현재 우리 재벌의 경우에 선단식 경영, 일가족에 의한 소유·지배의 집중, 전체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어떠한 형식이든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

- 2002년부터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에서, 각 규제유형별로 별도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으로 구분.

-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의 도입

2. 기업집단의 범위

-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제3호).
-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판단기준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주로 배우자, 친인척, 최대출자자 또는 임원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임원의 임면 등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다.(령 제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법 제9조, 령 제17조 제1항)

- 국내계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적용제외 대상으로 금융기업집단, 부실기업집단이 있다.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법 제10조의 2, 령 제17조 제5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

3. 기업집단의 지정

(1) 지정 및 통지(법 제14조, 령 제21조)

(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법 제14조의 2)

(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법 제14조 3, 령 제21조 제5항)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5)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권한(법 제14조의 4)

(6) 정보공개(법 제14조의 5, 령 제21조의 3)

-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기업집단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정보 공개
-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 명칭, 사업내용, 주요주주, 임원, 재무상황, 이사회운영.
-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7)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등(법 제14조 제5항, 령 제21조 제4항)

4. 규제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법 제9조)

1) 일반론

- 상호출자란 두 개의 회사가 서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주식의 상호보유), 형태에 따라 직접형, 고리형(순환형), 복합형이 있다.
- 폐해 : 상호출자는 출자의 환급에 의한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며(회사자본의 가공적 증대), 회사의 지배를 왜곡할 수 있고, 기업결합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폐해가 있다.
-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商 제342

조의 2),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商 제369조 제3항).

2) 규제 내용(제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끼리의 상호출자는 전면금지 된다(제1항).
- 예외사유는 ①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②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이 있고, 이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채권의 만족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상대방회사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취득한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제2항).

=> 처분이란 예외적으로 취득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대한 2006. 5.12, 2004두312)

(2)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법 제10조의 2)

- 각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1) 규제내용과 규제목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들 금융회사 등의 자금은 주로 고객의 예탁금과 보험료에 의해 형성되며, 결국 고객의 자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나 확장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2) 예외

i)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취득, ii)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우, iii) 상장된 국내계열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임원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계열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하여 15% 범위 내.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법 제11조의 2)

1) 규제목적과 규제대상

-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지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 규제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령 제17조의 8 제1항)

2) 규제내용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행위(대규모내부거래, 령 제17조의 8 제2항)를 할 때 그리고,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사회 결의와 공시 요구(법 제11조의 2 제1항).
- 공시의 내용은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이며, 이 업무는 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 제2항, 3항)
- 거래행위의 대상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및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예외인정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 2 제4항).

(5) 비상장 계열회사 등의 중요사항의 공시(법 제11조의 3)

- 기업집단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를 의무화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임.
- 적용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자산총액 100억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 제외)로써 금융회사·보험회사와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이다.

(6)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 4)

(7)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5조, 령 제21조의 3)

5. 범위반의 효과

(1) 시정조치(법 제16조)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채무보증의 해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범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법 제18조)

주식처분명령 또는 상호출자규정위반의 경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범위반상태

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

(2) 과징금(법 제17조)

- 상호출자금지위반의 경우 취득주식가액의 10% 이하.
- 채무보증금지의 경우 채무보증액의 10% 이하.

(3) 형사처벌

- 제66조 제1항 제5호 내지 8호 : 각 제한행위위반과 금융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 및 시정조치 이행확보규정 위반 또는 탈법행위 위반
- 제67조 제6호(시정조치불응), 제7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제68조 제3호, 제4호(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자료제출거부 등)
- * 과태료(제69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 공시규정 또는 자료제출요청규정 위반.